

##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

제정 2019년 7월 19일 조례 제173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문화”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.
2. “문화도시”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(財源)에 관한 사항
4.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
5.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
6.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**제6조(기초조사 등)**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

##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

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)**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,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도시 추진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3. 제7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및 사업 우선순위의 선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9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담당 국장
2. 오산시의회 의원 2명
3.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, 시민단체 대표자 및 일반 시민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11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2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**제13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오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